

구미시의회 위원회 실비변상 규칙안

제안연월일	2021. 12. .
제 안 자	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

구미시의회 위원회 실비변상 규칙안

의안	
번호	

제안연월일 : 2021. 12. .

제안자 :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

1. 제안이유

「지방자치법」 및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등 지방의회 관련 법규가 일괄 개정(2022. 1. 13. 字 시행)됨에 따라 구미시의회 위원회(인사위원회 등) 위원에게 지급하는 실비에 대하여 변상규정을 제정하여 위원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 참석한 때 일비지급(안 제3조)

나. 위원이 공무로 출장할 때 여비지급(안 제4조)

다. 시험문제 출제, 채점시 시험수당 지급(안 제5조)

3. 규칙안 : 붙임

4. 참고사항

○ 관계법령 :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제9조 및 제48조

구미시의회 위원회 실비변상 규칙안
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구미시의회 각종 위원회 위원(이하 “위원”이라 한다)의 일비 및 여비(이하 “실비변상”이라 한다)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) 각종 위원회 위원의 실비변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, 조례 또는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규칙에 의한다.

제3조(일비) 구미시의회 소속 공무원(이하 “공무원”이라 한다)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4조(여비)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5급 지방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5조(수당) 인사위원으로서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8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구미시의회에서 실시하는 시험에 필요한 시험문제를 출제하거나 채점하였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
관계법령

□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

제9조(인사위원회) ① 인사위원회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.

② 위원장은 인사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통지해야 한다.

③ 인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제48조(시험위원 등) ⑤ 시험위원·시험관리관 및 시험편집요원의 수당과 여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 다만,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위원·시험관리관·채점요원 및 시험편집요원의 수당과 여비는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예산의 범위에서 정한다.